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예산안은 202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 총괄

가.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본예산(a)	2023년도 최종예산(b)	2024년도 예산안(c)	증 감 (c-b)	증감률 (%)
총	계	718.3	718.3	752.0	33.7	4.7
일 반 회 계	기술심사담당관	50.6	50.6	109.0	58.4	115.4
	품질시험소	667.7	667.7	643.0	△24.7	△3.7

나.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본예산(a)	2023년도 최종예산(b)	2024년도 예산안(c)	증 감 (c-b)	증감률 (%)
	계	2,156	2,156	2,527	370	17.2
일 반 회 계	기술심사담당관	870	870	1,021	151	17.4
	품질시험소	1,286	1,286	1,506	219	17.1

2. 회계별 예산 편성 현황

가. 세 입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 산	2024년도 예 산 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718.3	752.0	33.7	4.7
기술심사담당관	계	50.6	109.0	58.4	115.4
	그외수입	7.2	6.4	△0.8	△11.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7.2	6.4	△0.8	△11.1
	지난년도수입	3.4	21.1	17.7	520.6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3.4	21.1	17.7	520.6
	기타과태료	40.0	81.5	41.5	103.8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40.0	81.5	41.5	103.8
품질시험소	계	667.7	643.0	△24.7	△3.7
	주차요금수입	7.8	8.9	1.1	14.1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7.8	8.9	1.1	14.1
	기타사용료	0.6	0.6	-	-
	청사 사용료 수입	0.6	0.6	-	-
	증지수입	658.0	629.0	△29.0	△4.4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557.8	571.8	14.0	2.5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32.4	1.8	△30.6	△94.4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7.8	55.4	△12.3	△18.3
	불용품매각대금	-	2.5	2.5	-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	2.5	2.5	-
그외수입	1.3	2.0	0.7	53.8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3	2.0	0.7	53.8	

나. 세 출 예 산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2,157	2,527	370	17.2	
기술심사담당관	계	870	1,021	151	17.4	
	소 계	744	891	147	19.8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6	459	63	15.9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6	459	63	15.9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198	188	△10	△5.1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6	33	△13	△28.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	13	△2	△13.3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90	90	-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7	52	5	10.6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150	244	94	62.7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150	244	94	62.7	
	기본경비	소 계	126	130	4	3.2
	기본경비	126	130	4	3.2	
	품질시험소	계	1,286	1,505	219	17.0
		소 계	899	1,100	201	22.4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899	1,100	201	22.4	
건설자재 품질시험		289	285	△4	△1.4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01	9	△92	△91.1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509	806	297	58.3	
기본경비		소 계	387	405	18	4.7
기본경비	387	405	18	4.7		

III. 분야별 세부내용

가. 세입예산안

1) 일반회계

- 기술심사담당관 소관(품질시험소 포함) 세입예산안은 모두 일반회계임.

【 기술심사담당관 】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115.4%인 5천8백4십만원 증가한 1억9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6백4십만원
- 지난년도수입
 - 지난년도 수입 2천1백1십만원
- 기타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8천1백5십만원

【 품질시험소 】

세입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3.7%인 2천4백7십만원이 감소한 6억4천3백만원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 주차요금수입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8백9십만원
- 기타사용료
 - 청사 사용료 수입 6십만원
- 증지수입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5억7천1백8십만원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1백8십만원
 - 각종계량기 검정 관련 수수료 5천5백5십만원
- 불용품매각대금
 -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2백5십만원
- 그 외수입
 -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백9십만원

나.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 기술심사담당관 】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17.4%인 1억5천1백만원 증가한 10억2천1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23년도 대비 15.9%인 6천3백만원 증가한 4억5천9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4억5천9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관련 예산은 2023년도 대비 5.1%인 1천만원 감소한 1억8천8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3천3백만원
 -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천3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천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5천2백만원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관련 예산은 2023년도 대비 62.7%인 9천4백만원 증가한 2억4천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2억4천4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3년도 대비 3.2%인 4백만원 증가한 1억3천만원임.

【 품질시험소 】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대비 17%인 2억1천9백만원 증가한 15억6백만원임.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면

-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을 위한 예산은 2023년도 대비 22.4%인 2억1백만원 증가한 11억원으로 그 내역은
 - 건설자재 품질시험 2억8천5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9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8억6백만원
- 기본경비는 2023년도 대비 4.4%인 1천7백만원 증가한 4억5백만원임.

IV. 검토의견

1. 예산 개요

1) 총괄

가) 세입 : 전년대비 4.7% 증가한 7억 5,202만원

나) 세출 : 전년대비 17.2% 증가한 25억 2,695만원

2) 일반회계

【 기술심사담당관 】

가) 세입 : 전년대비 115.4% 증가한 1억 900만원

나) 세출 : 전년대비 17.4% 증가한 10억 2,136만원

【 품질시험소 】

가) 세입 : 전년대비 3.7% 감소한 6억 4,302만원

나) 세출 : 전년대비 17% 증가한 15억 558만원

○ 2024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상기와 같으며,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 소관의 세출예산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전략목표로 정책사업 2건, 단위사업 4건, 세부사업 9건으로 편성하였음.

○ 정책사업들의 편성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건설공사 설계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6개 사업비(계속6) 8억 9,086만원을 편성하였고,

-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3개 사업비(계속3) 11억 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는 5억 3,566만원을 편성하였음.

2. 분야별 상세현황

가. 세입 예산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718.3	752.0	33.7	4.7
기술심사담당관	계	50.6	109.0	58.4	115.4
	그외수입	7.2	6.4	△0.8	△11.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7.2	6.4	△0.8	△11.1
	지난년도수입	3.4	21.1	17.7	520.6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3.4	21.1	17.7	520.6
	기타과태료	40.0	81.5	41.5	103.8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40.0	81.5	41.5	103.8
품질시험소	계	667.7	643.0	△24.7	△3.7
	주차요금수입	7.8	8.9	1.1	14.1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7.8	8.9	1.1	14.1
	기타사용료	0.6	0.6	-	-
	청사 사용료 수입	0.6	0.6	-	-
	증지수입	658.0	629.0	△29.0	△4.4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557.8	571.8	14.0	2.5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32.4	1.8	△30.6	△94.4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67.8	55.4	△12.4	△18.4
	불용품매각대금	-	2.5	2.5	-
	공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	2.5	2.5	-
그외수입	1.3	2.0	0.7	53.8	
수도미터 검사 수수료 수입 등	1.3	2.0	0.7	53.8	

- 2024년도 기술심사담당관(품질시험소 포함)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3,371만원(4.7%) 증가한 7억 5,20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계량기 관련 수수료 등임.

(1)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 건설기술심의 수수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5조¹⁾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2조²⁾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 금회 전년 대비 80만원(11.1%)이 감소한 6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수수료 부과대상기관의 건설기술심의 의뢰건수를 고려해 최근 3년간의 평균 심의 요청 횟수인 8건에 부과수수료 80만원을 곱하여 산정([표] 참조)하였음.
- 기술심사담당관은 심사대상에 대해 의뢰 요청 건 외에 심의 대상에서 누락되는 건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건설기술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임.

[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근거

□ 2024 세입추계	6,400천원				
○ 최근 3년간(2020~2022) 평균 징수액은 6,439천원이며, 2024년 수수료 부과대상 설계·진단용역은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 등 약8건 예상 = 800천원 × 8회 = 6,400천원					
[표] 수수료 부과대상 건설기술심의 연도별 개최 횟수					
수수료	2019	2020	2021	2022	2023(전망)
800천원	12건	7건	10건	8건	8건

- 1)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5조(심의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79조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2)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42조(심의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심의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으며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 최근 5년간 주요기관별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 실적

※ 2023. 10월 현재, (단위:천원)

연번	요청기관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합 계		부과	9,600	5,600	7,200	6,400	3,200	
		징수	9,600	5,600	7,200	6,400	3,200	
1	서울교통공사 (舊서울메트로, 舊 서울도시철도공사 포함)	부과	4,800	4,000	6,400	3,200	-	
		징수	4,800	4,000	6,400	3,200	-	
2	서울주택도시공사	부과	800	800	-	800	800	
		징수	800	800	-	800	800	
3	관악구청	부과	-	-	-	800	-	
		징수	-	-	-	800	-	
4	강남구청	부과	1,600	-	-	-	2,400	
		징수	1,600	-	-	-	2,400	
5	중구청	부과	800	-	-	-	-	
		징수	800	-	-	-	-	
6	동작구청	부과	800	-	-	-	-	
		징수	800	-	-	-	-	
7	서초구청	부과	-	800	-	-	-	
		징수	-	800	-	-	-	
8	양천구청	부과	-	-	800	-	-	
		징수	-	-	800	-	-	
9	강서구청	부과	-	-	-	800	-	
		징수	-	-	-	800	-	
10	구로구청	부과	-	-	-	800	-	
		징수	-	-	-	800	-	
11	서울문화재단	부과	800	-	-	-	-	
		징수	800	-	-	-	-	

2)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세입예산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중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한 이월액으로, 금회 전년대비 1,767만원(520.6%)이 증가한 2,112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세입추계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지난해 최초 편성되었는데,

- 금회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올해 「건설기술 진흥법」 관련 과태료 부과가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임.
- 서울시는 동 세입항목을 편성한 목적이 장기간 체납되고 있는 과태료의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체납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특단의 노력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임.

[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체납분 수입 산출근거

□ 2024 세입추계 ————— 21,122천원
○ 2024년 추계액 : 21,122천원 (5,035+16,087=21,122천원)
- '23년도 지난연도수입 중 미징수액 : 5,035천원
- 교육 미이수 : 300건 × 214,500원 × 25% = 16,087천원
• '23년 잔여 예상 부과건수 : 200건(도입 초기라 부과건수 예측 불가)
• 평균 부과금액 : 214,500원('23년 4월까지의 평균 부과금으로 산정)
• 미징수율 : 25%('23년 4월까지의 미징수율으로 산정)
※ 평균 징수율 : 75%

[표] 예산결산 내역 및 요구액 (2023. 5월 기준)

(단위: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	-	4,496	-	3,465	3,447	4,837	5,035	21,122

3)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입예산은 전액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로 금회 전년대비 4,148만원(103.8%)이 증가한 8,147만원을 편성하였음.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업(감리)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 및 제91조제3항제5호³⁾에 따라 감리전문회사가 대표자, 감리원 등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는데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3항제1호에 따라 법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임.
- 동 사업의 세수추계 방법은 최근 3년간 과태료 징수 결산액에 대한 평균액으로 산출([표] 참조)하였는데, 연도별 과태료 적발 건수 편차가 심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것으로 파악됨.

3)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표]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2024 세입추계	81,479천원
○ 2024년 추계액	81,479천원 (33,227+48,262=81,479천원)
○ 건설기술용역업 변경신고지연 과태료	115건 × 281,496원 = 33,216,528원
- '24년 예상 부과건수	115건('18~'22년 부과건수 평균)
- '24년 예상 평균부과금액	281,496원(최근 5개년 최대 최소 제외하여 산출)
○ 건설기술인 교육 미이수 과태료	300건(25건×12월) × 214,500원×75%=48,262,500원
• '24년 예상 부과건수	300건(도입 초기라 부과건수 예측 불가)
• 평균 부과금액	214,500원('23년 4월까지의 평균 부과금으로 산정)
• 징수율	75%('23년 4월까지의 징수율으로 산정)

[표] 최근 4년간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내역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35,200	40,065	38,702	101,645	38,613	36,857	39,990	27,690	63,877	81,479

○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과태료’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법에 규정된 제반사항 신고 지연으로 인한 법령위반사항을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 최근 4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표] 참조) 매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세수를 추계함에 있어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방증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표]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예산액 대비 실제 결산액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결산액	예산액 대비 결산 비율
2020년	25,000	40,065	160.3%
2021년	28,702	102,485	357.1%
2022년	38,613	36,857	95.5%
2023년	39,990	63,877	159.7%

(2) 『품질시험소』

1)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주차장법」 제19조의34)에 따라 품질시험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지난해 대비 116만원(14.1%)이 증가한 894만원을 편성하였음.
-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대비 116만원을 증액편성 하였는데, 이는 세수 추계를 최근 3년간('21년~'23년) 평균수입액(정기주차, 일일주차 별도 산정)으로 산출하였는데, '21년과 '22년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차량 출퇴근 장려정책'이 추진되어 일시적인 주차장 수입 증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임.
-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정책이 완화되고 서울시가 '탄소 중립정책'등을 추진하고 있어 자가 차량 출퇴근 이 감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를 추계하였는바, 좀 더 세밀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표] 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산출근거

□ 2024 세입추계	894만원
○ 주차요금수입 2024년 전망액 :	8,724천원 + 216천원 = 8,940천원
• 산출내역	
- 정기주차 :	727,000원×12월 = 8,724,000원
- 일일주차 :	18,000원×12월 = 216,000원
※ '21년 ~ '22년 4월 평균금액으로 산정	

- 4) 「주차장법」 제19조3(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표] 최근 4년간 청사 부설주차장 예산편성에 따른 결산내역

(단위 : 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4월)	결산전망	
3,685	4,525	3,913	8,908	5,795	9,198	7,776	2,788	8,364	8,940

2) 청사 사용료 수입

- 청사 사용료 수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2조⁵⁾에 따라 품질시험소 본관에 설치된 태양열 발전시설⁶⁾의 청사사용료 수입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세수추계는 공시지가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 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68만원을 편성([표] 참조)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품질시험소 청사 사용료 수입 산출근거

□ 2024 세입추계	69만원
○ 공유재산 사용료 2024년 전망액 및 산출내역	
• 2024년 전망액 : 685천원	
• 산출내역	
- 본관 사용료(태양열 발전시설) : 684,800원	
[공시지가(2,972,000원)×건축부지면적(1,278.8㎡)×옥상지수(0.018)]×요율(10/1000)	
= 684,800원	

-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6) 서울시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과의 협약(허가기간 '14. 8.18~'24.8.17)에 의거 품질시험소 옥상을 10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임대해 주고 있으며,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이 사용료를 매년 지불하고 있음에 따라 세입 전망액으로 편성.(2014.9. 준공. 용량 36kw)

3)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 53조제3항⁷⁾ 및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3조⁸⁾에 근거한 품질시험 확인 및 건설공사 발주자의 시험의뢰에 따른 처리수수료임.
- 금회 전년대비 1,393만원(2.5%)이 증가한 5억 7,17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품질점검 평균치에 따른 추계액 2억 445만원과 최근 4년간 건설자재시험 평균치 추계액 3억 6,730만원의 합계액을 적용한 것으로,

[표] 최근 4년간 연도별 품질점검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전망)
품질점검	223	200	196	175
적정성 확인	125	99	103	100
이행 확인	98	101	93	75

7)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8)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①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시보에 고시하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등"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시험소장에게 품질검사,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점검대상 공사현장이 감소추세([표] 참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회 편성된 예산이 지난해 보다 증가한 것은 정밀한 예산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예산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 건설공사 품질점검 수수료 수입 산출근거

□ 2024 세입추계	571,752천원
○ 2024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204,454천원 + 367,298천원 = 571,752천원)
- (건설공사 품질점검) 2024년 수요조사는 '24년 연초 실시 예정으로, 전년도에 이어 점검대상 공사 현장의 감소 예상됨	: 204,454천원
•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 3개년 평균치 사용 = 100개소
⇒	100건 × 1,671,370원 = 167,137,000원
•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 감소 추세 반영하여, 2개년 감소율 평균치 13% 적용
⇒	65건 × 574,110원 = 37,317,150원
• 최근 3년간 연도별 품질점검 건수	
- (건설자재 품질시험) 1,600건 × 229,561원	= 367,298천원
'20년~'23년 예정 연평균 품질시험 건수, 수수료로 산출	
• 품질시험 건수 평균	: 1,600건
• '23년 예상 평균징수액	: 최근 5개년 평균징수액의 평균 229,561원

4)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제13호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¹⁰⁾과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¹¹⁾ 그리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9)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중략)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3.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1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③ 전기식 택시미터에 대해 법 제 47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전기식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1)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검정 수수료) 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조례」 [별표 0]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표] 참조)에 근거하여 택시미터 검정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표]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부과 기준 (2. 분야별 수수료, 자.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단위	금액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금액으로 징수한다.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1대	2,800원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 ※ 단,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1대	600원

- 금회 전년대비 3,062만원(94.5%)이 감소한 17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22년 12월 중형·모범·대형택시에 대한 앱미터기를 전면 도입¹²⁾함에 따라 전기식 미터기는 구급차, 장애인 콜택시, 고급 택시 등 일부에만 사용하게 되어 택시미터 검정 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따라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실시할 때에는 정치검사 수수료와 주행검사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을 수 있다.

12) 서울시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_보도자료(2022. 6. 24.)

서울시, IT기술로 정확도 높은 'GPS 택시 앱미터기' 본격 도입...부당 요금 민원 해소, 신뢰도 ↑
 - 위치, 거리 정확도 높은 'GPS 기반 앱미터기' 본격 도입...22년 내 서울 택시 전체 확대한다
 - 바퀴 회전수 계산했던 '기계식 미터기'→IT 기술지도 위치 적용한 '앱미터기'로...택시 산업 변화 물결
 - 미터기 오작동 등 승객 불편 민원 획기적 해소 전망, 시계의 수기입력 등 어려움도 줄어
 ~ (후략) ~

[표] 택시미터 검정 수수료 산출근거

□ 2024년도 세입추계 ————— 1,766천원

○ 산출내역: 255대(최근 3년간 연평균 대수) × 6,925원 = 1,765,875원

- '24년 예상 검정 대수 : 255대
 - ⇒ 구급차 : 124대('21년~'23년 3개년 평균)
 - ⇒ 장애인 콜택시 : 129대(시설관리공단 증감차에 따라 검정 대수에 영향,예측 불가능이라 판단하여 3개년 평균)
 - ⇒ 고급 택시 : 2대(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
- '23년 4월까지 평균검사 수수료 : 761,800원 ÷ 110대 = 6,925원
- 최근 3년간 검정실적

구 분	'21년	'22년	'23년		비고
			4월까지	12월 예정	
합 계	316	174	110	331	
구 급 차	122	116	43	134	
장애인콜택시	139	56	65	195	
고급 택시	55	2	2	2	

5)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는 가스미터(220원), LPG미터(23,180원), 저울(3,390원), 전기차충전기(11,100원) 검정 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 금회 전년대비 1,229만원(18.1%)이 감소한 5,545만원을 편성하였음.
- 가스미터 수수료는 '23년 결산 전망(251,917대)을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LPG미터는 최근 3년간 재검정 실적이 없어 세입추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기차충전기는 최근 3년간 2건의 수요를 반영하여 '24년도에 2건의 검정이 있을 것으로 추계 편성하였으나,

- 전기차충전기 검정장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과 금회 예산 편성안에도 검정장비에 대한 구매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바, 전가차충전기 재검정 수수료 수입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 이는 세입 산출근거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므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충전기 검정설비 구축을 통해 '27년부터 전기충전기 수리재검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산출근거

□ 2024 세입추계		55,454천원		
○ 2024년 추계액 : (55,422천원+10천원+22천원)=55,454천원				
○ 산출내역				
- 가스미터 : 251,917대('23년 전망 대수와 동일 적용)×220원=55,422천원				
- 저 울 : 3대×3,390원=10천원				
- 전기차충전기(신규 사업) : 2대×11,100원=22천원				
⇒ 최근 검정실적 및 '23년도 전망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대수)
가스미터	274,062	295,806	315,817	251,917
저 울	2	4	4	3
※ LPG미터는 최근 3년간 재검정 실적이 없어 '24년도 세입추계에서 제외				
※ '24년도 전기차충전기 검정설비 구축 및 재검정 예정으로 2건 예측				
⇒ 최근 3년간 서울시 관내 재검정 건수는 2대임('20년: 0대, '21년: 1대, '22년: 1대)				

6)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

- 수도미터검사 수수료는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¹³⁾에 따른 수수료 수입으로 금회 전년대비 66만원(46.2%)이 감소한 192만원을 편성하였음.
- 수도미터검사는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개정(2021. 5. 20.)¹⁴⁾ 되어 '22년도부터 민원검사 결과 계량기가 정상일 경우 수수료를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함에 따라 의뢰 건수가 급감하였으며, 최근 2년간의 평균 검사건수(592건)을 반영하여 세수를 추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수도미터 검사수수료 산출근거

□ 2024년도 세입추계 ————— 1,927천원						
○ 수도미터: 592대 × 3,255원/대 = 1,926,960원						
- 1,855,390원('22년도 징수총액) ÷ 570대('22년도 검사대수) = 3,255원						
- 최근 3년 검정실적 및 '23년도 전망실적						
구 분	평균 검사대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대수)
	4년 평균	2년 평균				
검사 건수	878	592	1,264	1,066	570	614

- 이상과 같이 '기타 사용료 수입',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각종 계량기 관련 수수료', '수도미터검사 수수료 수입 등'

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9-487호, 2019. 12. 12 시행)

「계량기 형식승인 등의 수수료 및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계량기별 검정·재검정 수수료 및 비용)

1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을 살펴보면,

- 예산편성 시 추계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일부는 '21년 결산 전망액을 반영하거나 최근 3년 평균 결산액을 설정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세입 징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세수추계는 관성적인 예산편성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바,
-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년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세출 예산안

(1)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	
총 계		2,157	2,527	370	17.2	
기술심사담당관	계	870	1,021	151	17.4	
	소 계	744	891	147	19.8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6	459	63	15.9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96	459	63	15.9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198	188	△10	△5.1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 제공	46	33	△13	△28.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	13	△2	△13.3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90	90	-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7	52	5	10.6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150	244	94	62.7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150	244	94	62.7	
	기본경비	소 계	126	130	4	3.2
	기본경비	126	130	4	3.2	
	품질시험소	계	1,286	1,505	219	17.0
		소 계	899	1,100	201	22.4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899	1,100	201	22.4	
건설자재 품질시험		289	285	△4	△1.4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101	9	△92	△91.1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509	806	297	58.3	
기본경비		소 계	387	405	18	4.7
기본경비	387	405	18	4.7		

(1) 『기술심사담당관』

1)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P.15)

- 동 사업은 건설공사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안전성, 적정성, 설계경제성(VE) 등을 심의하여 건설기술 발전과 시공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6,305만원(15.9%)이 증가한 4억 5,876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2023년도 및 2024년도 건설 기술심의회 세부예산(안)

(단위:천원)

사 업 명	2023년 (A)	2024예산(안) (B)	증감(B-A)	(B-A)*100/A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395,716	458,769	63,053	16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694	7,897	203	3
사무관리비	319,780	387,910	68,130	21
공공운영비	2,000	2,000	0	0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0	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370	8,370	0	0
특정업무경비	25,872	25,872	0	0
행사실비지원금	12,000	6,720	△5,280	△44

- 서울시는 주요 증액 사유로, 기본설계적격심의 횟수 확대(4회 →6회)와 외부전문가 기동점검의 증가(6회→18회)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인데,

[표] 최근 5년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년도	계	용역발주 심의	설계 심의	정밀안전 진단심의	사업수행 능력평가 기준심의	입찰방 법심의	입찰안내 서심의	설계심의 사후평가	① 설계경제성 (VE)검토	② 공사기간 적정성심의	③ 건설사업관 리계획심의	설계적격 심의
2023 (9.30. 기준)	216	88	39	31	1	6	3	-	17	13	16	2
2022	310	86	56	72	-	3	4	8	39	13	21	8
2021	248	70	63	88	1	1	2	-	-	4	13	6
2020	273	76	64	43	1	4	2	8	58	8	4	5
2019	256	111	62	60	4	5	3	8	-	3	-	-

- 기본설계적격심의의 경우 예산편성 시 차년도 수요조사를 통해 부서별 심의의뢰 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 외부전문가 기동점검 증가의 경우는 전년도 6회에서 금회 18회로 크게 확대하면서 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일반점검 체계에서 누락되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시공 중인 공사장 및 공용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됨.
- 여기서 외부전문가는 건설기술심의위원 중에서 선정하여 기동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학술적 측면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2)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사업별설명서 P.21)

-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예산은 전년대비 1,296만원(28.3%) 감소한 3,2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 이는,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 횟수 감소(18회→16회)에 따른 강사료 및 원고료가 감액(374만원)되는 한편, 기술정보지와 설계변경 사례집 미배포계획에 따라 인쇄비와 제작비 전액(880만원)을 미편성함에 따른 것임.
- 동 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직원 만족도 조사 내역([표] 참조)을 살펴보면 대부분 항목에서 만족하고 있고 직장교육 현황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표] 기술직공무원 온라인 직장교육 직원 만족도 조사내역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만족	보통	이하	만족	보통	이하	만족	보통	이하
자기발전 및 실무수행에 도움	95	5	-	97	3	-	93	6	1
기술사 자격시험 대비 도움	96	4	-	89	10	1	91	8	1
직장교육 만족도	94	6	-	90	9	1	92	8	-

- 보다 적극적인 교육기회가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을 통한 사업의 축소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저하를 가져올 소지가 있는바 향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표] 최근 2년간 기술직공무원 온라인 직장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육과정	신청인원	수강인원
계			1,008	351
2022년	상반기	토목 I, 건축, 녹지	245	88
	하반기	토목 II, 기계, 전기	197	87
	합 계		442	175
2023년	상반기	토목 I, 건축, 녹지	360	90
	하반기	토목 II, 기계, 전기	206	86
	합 계		566	176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사업별설명서 P.25)

- 동 사업은 서울시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도시기반시설 건설 기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건설기술 발전과 시민생활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226만원(13.3%) 감소한 1,291만원을 편성하였음.
- 서울시 건설상 시상외의 경우 서울시 건설분야 공로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다양한 계층에 홍보를 강화하여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단체가 수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건설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별설명서 P.29)

-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자체설계 능력 향상을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과 동일한 9,000 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기술용역 발주부서 자체시행 기준’¹⁵⁾에 따라 전문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단순설계 등 7개 분야의 47개 공종에 대한 자체설계도면(CAD) 작성비를 지원¹⁶⁾하는 것임.

[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최근 5년간 예산 집행 및 불용 내역

※ 2023. 9월 30기준, (단위 : 천원)

연 도	발주부서 요청금액	당초예산	전년 이월	예산현액	집행금액	불용액	불용률(%)	비고
계	416,091	460,000	-	460,000	339,025	67,648	-	4년간 (‘19~’22) 평균불용률 18.3%
2023	90,000	90,000	-	90,000	61,154	-	-	
2022	86,833	90,000	-	90,000	79,941	10,059	11.2	
2021	89,985	90,000	-	90,000	61,331	4,188	4.5	
2020	88,163	95,000	-	95,000	81,995	13,005	13.7	
2019	61,110	95,000	-	95,000	54,604	40,396	42.5	

- 자체도면 작성에 따른 예산절감과 직원들의 업무 능력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효용성은 입증되었으나, 최근 4년간(‘19년~’22년)평균 불용률이 18.3%에 이르고 있으므로,

15)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58호, (‘11. 7. 8.)

16) 자체설계도면(CAD) 작성비 지원 분야: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상수도, 건축, 기계·설비, 조경 분야

- 자체설계 대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성화 기여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추진하여 공무원의 역량강화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표] 2023년도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 내역

연번	기관(부서)	자체설계 대상사업	배정금액	집행금액
	계		90,000	61,154
1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 공사 외 4건	12,150	-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4,430	4,250
3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3년 경의선숲길 정비사업	5,682	5,510
4	서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월드컵공원 노후 조경·편익시설 유지보수 외 2건	5,809	-
5	종로구 (치수과)	세검정 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개량 외 2건	5,499	5,000
6	종량구 (치수과)	용마산로 115가길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외 6건	16,642	15,800
7	중구 (공원녹지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2,983	2,983
8	노원구 (푸른도시과)	산사태 예방사업 외 1건	8,785	8,785
9	은평구 (도로과)	보행자 우선도로 유지보수 사업 외 3건	18,826	18,826
10	서초구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기점 및 종점 노면표시 사업	9,194	-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33)

- 동 사업은 건설공사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성 여부의 신속한 확인을 위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513만원(10.6%) 증가한 5,238만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정보화용역사업의 단가 현실화에 따른 2023년 SW기술자 평균임금([표] 참조) 적용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른 제경비율(140%)¹⁷⁾ 등을 반영한 것으로,

[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3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구 분	평균임금(일당)	
	2022년	2023년
IT PM	406,823	463,265
데이터아키텍트	414,770	518,084
응용SW 개발자	306,034	311,962
데이터베이스 운용자	243,285	326,653
IT시스템 운용자	297,180	326,653

- '계약금액조정 검증 시스템' 적용 후 활용실적([표] 참조)을 살펴보면, '23년 9월 30일 기준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은 제비율 검증으로 50억 6천만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으로 2억 69백만원, 총 합계 53억 29백만원으로 사업추진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 건, 백만원, '23.9.30. 기준)

년도	계		제비율 검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증	
	조치건수	금 액	조치건수	금 액	조치건수	금 액
합 계	5,394	5,260	4,992	5,060	402	269
'23년	1,548	1,882	1,458	1,834	90	47
'22년	1,351	1,094	1,247	1,012	104	82
'21년	2,495	2,284	2,287	2,214	208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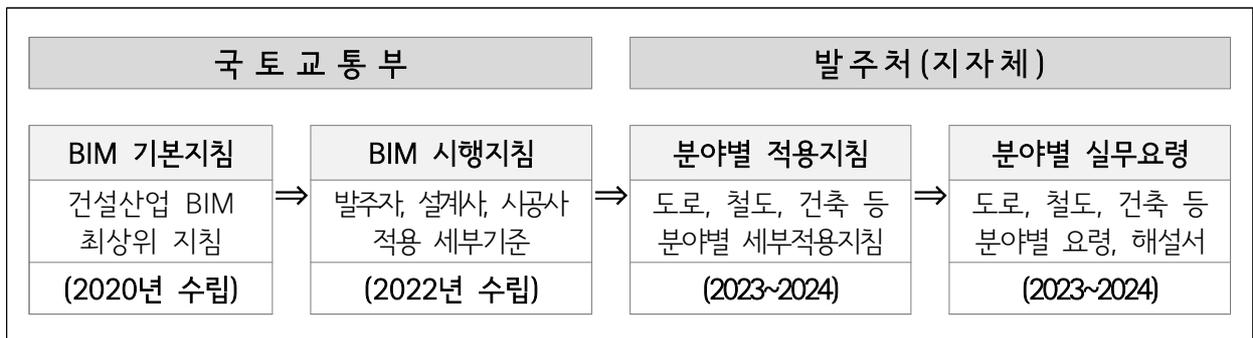
17)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3년)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40~150%

6) 스마트건설기술 BIM 적용지침 수립 (사업별설명서 P.36)

- 동 사업은 스마트건설의 핵심기술인 BIM¹⁸⁾을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의 건설사업 전 주기에 도입하기 위해 설계 기준 및 운영 지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년대비 9,394만원 (62.7%) 증가한 2억 4,394만원을 편성하였음.
-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18. 10월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후 '20. 12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처(지자체)가 사업유형 및 특성에 맞는 'BIM 적용 지침'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22. 7월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BIM 시행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 서울시는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 예산편성을 통해 '서울시 BIM 적용지침 수립용역'을 추진('23년 4월~'24년 10월)하였고, 금회 2차년도 용역을 시행하고자 2억 4,394만원을 편성한 것임.

[표] BIM 지침 수립단계(국토부 지침)



18)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란 시설물의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3차원 모델 기반으로 통합하여 건설정보와 절차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상호 연계하고 디지털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디지털 전환 체계

- 서울시는 본 용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면 BIM 설계가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로 및 철도, 건축 분야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우선 마련하고, 전체적인 건설단계 및 타 시설 분야로의 확대는 정부정책 및 기술발전 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방향성은 적절하다 사료됨.

(2) 『품질시험소』

1) 건설자재 품질시험 (사업별설명서 P.43)

- 동 사업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으로 부실공사를 예방하여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품질시험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전년대비 360만원(1.4%)이 감소한 2억 8,534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감액사항은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외부위원수당’ 1,313만원과 ‘직원업무능력 향상 교육비’ 67만원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외부위원수당’의 경우 건설공사 등의 감소로 품질점검의뢰 건수가 감소추세([표] 참조)에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판단되고,

[표] 최근 4년간 연도별 품질점검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전망)
품질점검	223	200	196	175
적정성 확인	125	99	103	100
이행 확인	98	101	93	75

- ‘직원업무능력 향상 교육비’는 직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교육을 연 2회로 축소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품질시험소 시험장비 교정 수수료 단가 비교표

연번	용도	장비명	교정주기(년)	규격	'23년도			'24년도 계획		
					수량(대)	단가(천원)	금액(천원)	수량(대)	단가(천원)	금액(천원)
1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1	CT-II	8	36.3	290	4	36.3	145
		정차검사기	3	CT-V	9	132	1,188			
2	LPG미터	기준비중부액계	3	0.500-0.650g/cm³						
				1.000-1.060g/cm³						
		전기식 지시저울	1	100g~30kg	1	85	85	1	87	87
		기준유리제 온도계	1	0~50°C	2	97	194	2	97	194
-2~52°C										
3	주유기	기준탱크	2	20L	2	187	374			
				100L	1	385	385			
4	저울	분동	2	20kg				20	37.4	748
		기준분동(1급)		1mg~10kg				2	514	1,028
5	수도미터	전자유량계	2	DMF2110				16	508	8128
				Promass				2	251.5	503
		온도변환기	2	TFT35				14	298	4172
		압력계	2	S-20				14	305	4270
합계					23		2,516	75		19,275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사업별설명서 P.50)

- 동 사업은 노후된 시험장비를 교체하여 시험능률을 향상시켜 품질시험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회 전년 대비 9,234만원(91.1%)이 감소한 858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감액사유는 서울시가 건축재정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품질시험소도 보유장비에 대해 최대한 정비해 사용키로 함에 따른 것임.

- 다만, 품질시험소의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표] 참조)에 따르면 '24년 편성했어야 할 예산액이 2억 25백만원이라는 점에서 추후 예산 편성 시 부담이 가중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며,

[표] 시험장비 확충 5개년 계획('23년~'27년)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3조,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5개년)

추진방향

- 장비의 성능개선, 시험항목 추가 및 시험량 증가 및 시험실 환경 개선 등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 ⇒ **신규 구매**
-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된 시험장비 ⇒ **교체 구매**
 -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저하 및 고장의 우려가 있어 장비의 지속적 사용이 곤란한 장비
 -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장비라도 시험횟수가 많아 손상되거나 수리비용이 과다한 경우의 장비
 - 교정결과 오차범위가 커져 정밀도가 낮아진, 사용이 곤란한 장비
- 수리 및 교정검사 후 사용 가능한 장비 ⇒ **계속 사용**
 -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고 기능저하가 거의 없으며, 현대화가 불필요한 장비는 수리 및 교정검사를 실시하여 시험장비 계속 사용

추진 계획

- 총사업비 : 688백만원
- 사업규모 : 교체 등 53대
- 시험장비 확충 세부계획
- 사업규모(구매 수량):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량	53	13	11	10	9	10
금액	688	72	225	181	130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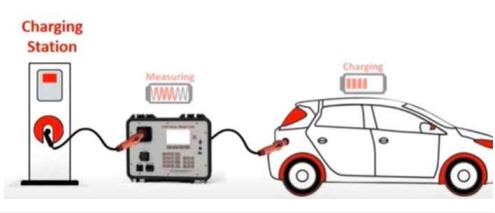
- 2023년: 건조기 등 13대 : 72백만원
- 2024년: 힘강도시험기 등 12대 : 225백만원
- 2025년: 휠트레킹시험기 등 10대 : 181백만원
- 2026년: 만능재료시험기 등 9대 : 130백만원
- 2027년: 건조기 등 10대 : 80백만원

- 또한 전기차충전기 검정장비의 경우 '20. 1월 법정계량기로 지정되어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수리 재검정('27년부터 수리재검

정 시작)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구매 계획」¹⁹⁾을 수립하여 이동형 검사장비를 '24년도 예산안에 6,600만원을 편성하려고 계획하였는데,

- 금회 구매예산 전액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리 재검정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바, 사업추진 전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구매계획 (2023. 7.)

<input type="checkbox"/> 구매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구매 ○ 구매내역 : 이동형 검정장비 2대(교류형, 직류형) ○ 교류형, 직류형 검정장비 현황 		
구분	교류형	직류형
커넥터 타입	TYPE1 (AC완속)	CCS1 (DC콤보)
오차시험 방법	<p>시험 및 부하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누적전력량과 전기차충전기 누적전력량을 비교하여 오차율 계산</p> 	<p>시험 장치에서 측정한 전기자동차 누적전력량과 전기차충전기 누적전력량을 비교하여 오차율 계산</p> 
구성품	시험장치(통신장치 포함), 부하장치 등	시험장치, 전기자동차(별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 : 66백만원【'24년도 전액 시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매예산 확보 '23. 7 ~ 12. ○ 구매사업 추진계획 수립 '24. 02. 		

19) 「전기자동차 충전기 이동형 검정장비 구매계획」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1244, 2023. 7. 13.)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사업별설명서 P. 55)

- 동 사업은 품질시험소 청사 청결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청사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회 전년대비 2억 9,776만원(58.3%)이 증가한 8억 649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증가사유는 품질시험소 청사 내 촉탁직 근로자가 2명에서 3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5,708만원과 청사 노후 행정장비 교체에 따른 물품취득비 4억 2,531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표] 촉탁계약직 근거 및 정년

○ 관련근거 : 2023년 촉탁계약직 관리 운영 지침(노동정책담당관-30717호, '22.12.14.)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원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촉탁계약직은 고령자 적합 업무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 직종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년(만60세)이후 재고용하여 만65세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을 승계한 직종을 의미함

[표] 품질시험소 공무원 및 촉탁계약직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소요예산
	계	시설 경비원	시설 청소원	계	시설 경비원	시설 청소원	
계	5명	3명	2명	5명	3명	2명	
공무원	3명	1명	2명	2명	1명	1명	시 재무과에서 일괄반영
촉탁계약직	2명	2명	-	3명	2명	1명	기관 자체반영

- 인건비의 경우 품질시험소에서 근무 중인 3명의 공무원 중 1명이 퇴직 후 촉탁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 물품취득비 4억 2,531만원은 품질시험소 내 민원실 CCTV 추가설치에 따른 영상감시장치 및 CCTV 구매비용과 노후된 청사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기위한 것으로,
- 품질시험소의 노후도 개선 및 최적의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하겠음.